

## 2-31. 단감원에서 복숭아명나방의 발생소장과 수확과에서의 피해를

김창현, 이규철, 강창훈, 박정규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복숭아명나방은 사과, 배, 밤뿐만 아니라 단감의 과실에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의 단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검역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감원에서 이 해충의 발생을 조사한 결과가 없어,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경남 지방의 단감원에 성페로몬트랩을 7개 지역, 수은유아등을 4개 지역에 설치하여 발생소장을 조사하고, 수확과에서 복숭아명나방에 의한 피해과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복숭아명나방은 단감원에서 연간 3세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등 조사에 의한 발생최성기는 제1화기가 6월 하순, 제2화기가 8월 중순, 제3화기가 9월 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페로몬에 의한 발생소장도 유아등 조사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발생 peak가 매 세대마다 1주일정도 일찍 탐지되었다. 2001년에는 2000년에 비해 발생정도가 발생량이 적고 발생 peak도 뚜렷하지 않았다.

유아등 또는 성페로몬을 설치한 4개의 과원에서 수확기의 수상과(樹上果)를 대상으로 복숭아명나방에 의한 피해과율을 조사하였다. 과원당 10주에서 주당 10개의 과일 (총 400果)을 임의로 택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과원의 단감 과실에서는 단 1개의 과실만이 복숭아명나방 유충의 피해를 받았다. 이는 현재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제체계 하에서 복숭아명나방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복숭아명나방의 被害果가 나타난 창원의 한 과원에서는 과원 내에 복숭아명나방의 기주가 되는 밤나무 4그루가 군데군데 자라고 있었으며, 밤 과실의 약 50%가 이 해충의 피해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 단감원에서도 단감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밤나무를 베어내고 현재의 방제체계 대로 방제한다면 복숭아명나방에 의한 수확과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